

고성군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490호)

심사보고서

1998. 7. 30.

총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8. 7. 15 고성군수

나. 회부일자 : 1998. 7. 18

다. 상정·의결일자 : 1998. 7. 29 상임위원회 상정·의결

2. 개정이유

- IMF의 금융지원조치 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시달된 감면조례 개정표준안에 따라 고성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및 주택임대사업자가 취득할 때에 감면받는 임대용 공동주택 규모를 확대코자 함.

3. 주요골자

- 주택건설사업자 및 임대사업자가 재산세를 감면받는 임대용 공동주택 규모를 당초 전용면적 60㎡ 이하에서 전용면적 85㎡ 이하로 확대함. (안 제12조 제2호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시달된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에 근거한 것으로
- IMF 파동으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내 건설 및 임대주택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고성군세 감면범위를 확대 하려는 것으로 관련 내용을 보완·개선함은 타당하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감면규모를 60㎡에서 85㎡로 확대한다면 고성군내 수혜대상 및 규모는
- 답 : 영생아파트, 남산아파트 2동이 해당.

6. 토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1998. 7. 29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